

#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회 규정

제정 1997. 9. 26.

개정 2002. 2. 15.

2003. 9. 24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22조에 규정된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회(이하 “교수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교수회는 본 대학 전임교수로 구성하며 의장은 학장, 부의장은 교무부학장으로 한다.

**제3조(소집)** 교수회는 필요에 의하여 학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재적교수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하여야 한다.

**제4조(회의)** 교수회는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(기능)** 교수회는 학장의 소관업무 중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학칙,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
2. 입학,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중요 사항
3. 학생지도, 장학 및 후생에 관한 중요 사항
4.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중요 사항
5. 교과과정
6. 대학 인사위원회 위원 선출
7. 학부 또는 학과간의 업무 조정
8. 학부 또는 학과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
9. 평의원 선출
10. 기타 타 규정에 정한 사항이나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위임)** 교수회는 제5조의 심의사항 중 그 일부를 학부장회 또는 기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(별표 1 “농업생명과학대학의 학사업무 심의·의결 절차” 참조).

**제7조(의장 등의 직무)** ① 의장은 회무를 장리하고 교수회를 대표한다.

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8조(간사)** ① 교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행정실 교무주무자가 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교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며, 회의록에는 출석교수 2인 이상의 서명·날인을 받아야 한다.

부칙(제1호, 1997.9.26.)

이 규정은 1997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39호, 2002.2.15.)

이 규정은 200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49호, 2003.9.24.)

이 규정은 200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## 농업생명과학대학의 학사업무 심의

심의안건내용	예비심의	심의 또는 위원 의결	심의위원	비고
1. 학칙, 제정령의 개정과 제정	학사운영위원회	학부장회	교수회	
2. 입학, 수료 및 졸업(회시과철)		학부장회		
a 입학, 유상 a 수료 및 졸업(졸업사정)		학부장회		
3. 학생지도, 장학 및 부정	학사운영위원회	장학위원회	교수회	
a 장학 및 부정		지도위원회		
a 학생지도		지도위원회		
4. 학생 포상 및 징계	학사운영위원회	학부장회	교수회	
5. 교과과정(학사과정)		학부장회		
6. 대학 인사위원 추천		학부장회		
7. 학부 또는 학과간의 업무조정	학사운영위원회	학부장회	교수회	
8. 학부 또는 학과(전공 포함)의 설치 및 폐기		학부장회		
9. 불의위 상훈		학부장회		
10. 기타 사항	학사운영위원회	교수인사관리평가위원회	교수회	
a 교수인사관리·평가		대학원학사위원회		
a 대학원의 일반 학사업무		대학원학사위원회		
a 대학원 교과과정		연구관리위원회		
a 연구비 및 간접연구승비관리		인사위원회		
a 교수임용(선임, 승진, 재임용)심사		인사위원회		
a 연구교수, 과학교수 추천		학부장회		
a 교수와 연구에 관한 등장기 대학 장전개의		학부장회		
a 주요 시설사업과 시설환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		학부장회		
a 전문직속 직사제 확충사업에 관한 사항		학부장회		
a 학생 및 교수의 징권조정		학부장회		
a 외국대학과의 협조업무		학부장회		